

안산시축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

안산시축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보 건 소
입 안 자	실·국장 직위·성명	보건소장 김 태 수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보건 행정 담당 한 재 주
	담당자 성명·전화	김 춘 근 (행정 2551)

안산시축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

안산시축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보 건 소
입 안 자	실·국장 직위·성명	보건소장 김태수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보건행정담당 한재주
	담당자 성명·전화	김춘근 (행정 2551)

제8편 직속기관 제1장 보건소 안산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

안산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

[안산시조례 제25호]
1986. 1. 1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의료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의료인에게 보수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급액) ① 촉탁의료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급 및 기말수당을 지급한다.

② 기말수당지급 방법은 지방공무원의 예에 의한다.

제3조(지급일) 보수의 지급은 지방공무원 보수,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일에 지급한다.

제4조(보수계산) 촉탁의료인이 해외에 여행함으로써 의료행위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달의 보수는 일괄 지급한다.

제5조(지급정지) 이 보수의 지급을 위하여 보조되는 국고보조액이 50%미만인 연도에는 이 조례가 규정하는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8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.